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8
------	-----

2023.03.0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월 12일, 박성연 의원(찬성자 2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3.3.)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성연 의원)

1. 제안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장’ 기준으로 개선을 권고한 정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법과 조례간 적용 대상을 일치시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함(안 제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맞춰 “주소와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서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됨.

나. 조례 적용 대상의 간소화(안 제3조)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소상공인지원조례”)를 제정(2014.10.20.)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및 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사업 내용〉

구분	내용
경영 및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과밀업종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 지원

-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과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음(제3조).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함¹⁾.
 -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¹⁾ 연합뉴스(2022.6.9.)_ "소상공인 25만명, 사업장과 거주지 다르다고 지원 제외"

-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을 “사업장”을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함[참고자료].
- 한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제정(2021.3.5)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명시한 반면, 소상공인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이 “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존치되면서 조례 간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통일하면서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12일
발 의 자: 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태수,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송재혁,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그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번호

20221223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성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2.12.23.

회신일 : 2022.12.2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 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사업장 요건만으로 개정·완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제8조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등 지원 관련 규정과 결합되어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합리적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

- 안 제3조는 본 지원조례적용범위를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에서 서울시에 사업장 주소없이 서울시에서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포함시킴으로서, 제6조 시장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시행의무, 제7조 실태조사 범위의 확대, 제8조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등과 결합되어 향후 예산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서울시 집행기관에서도 주사업장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마케팅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인근에 주소지를 두면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영세소상공인 사례가 적지 않음. 또한 반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은 경기도, 인천 등에 두는 사례도 있으나, 관련 문헌에는 전자가 많다고 보고 있음)에 대한 공식통계는 물론 이러한 소상공인 전체 모집단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예산에서 집행기관의 지원 범위 확대 의지와 정치적 협상력에 따라 예산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객관적 비용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주무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